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7일, 조지연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가결)

제2차 전체회의(2025.9.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지연의원)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및 사업자(제조자·수입자·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반사업자의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시정 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고자 함. 한편,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엄중조치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취급자의 책무 신설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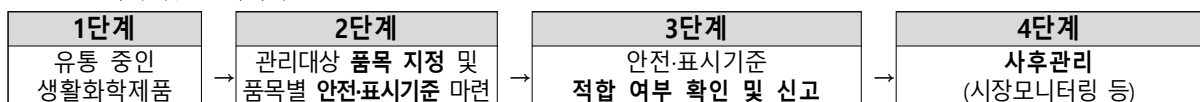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염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

현행	개정안
	이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현행법¹⁾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²⁾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를 위하여 제정(2018.3.20., 2019.1.1.시행)되었고, 현행법 제2조³⁾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2조)]

조 항	내 용
제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2호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3호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유해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국가, 사업자(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하는 자) 및 사용자 각각의 이해당사자별로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황 조사		(신고 후 시장 유통)	
▲ 실태조사(법§7) ▲ 위해성평가(법§8)	▲ 안전·표시기준 마련(법§9~10) ▲ 안생품 지정 고시	▲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시험기관) → 제품정보 등 신고 후 판매(기업) * 현행 유효기간 3년	▲ 유통제품 조사 ▲ 법률 위반 시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조치 등 명령, 형사고발

주) 제품의 형태, 용법에 따라 위해도가 다르게 평가되어 단일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대상으로 관리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품 유해성·효과 등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3) 법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관련하여 국가, 사업자, 사용자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각 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국가·사업자·사용자의 책무]

대 상		책 무
국가		①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할 책무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시책 등을 강구할 책무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공통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협력할 책무 ②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질 책무
	제조·수입·판매·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책무
	사용자	①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다만,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책무조항(안 제3조의2)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조항(안 제44조의2)의 경우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장 총칙4)에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적용 범위)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규제 관련 개선명령 신설 등

개정안은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판매자에게 환경부장관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수입 금지 및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및 제34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 등) ① (생략)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 ----- <u>. 다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달리</u>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3. ~ 14. (생략) ②·③ (생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7. (생략)	<u>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u> 제57조(벌칙)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3.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6.·7.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10조⁵⁾에서는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

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안전기준6)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다시금 확인을 받도록 함.

-
- 5)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위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안전기준) 소비자의 제품 사용·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하여 세 기준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 설정**
- ①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②용기 및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③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및 제품 수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⁷⁾
품목 수	35	35	39	43	43	44
제품 수	50,178	99,902	193,899	213,623	213,898	205,052

자료: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법 제9조)⁸⁾ 예시]

구분	함유금지물질	함유물질 함량기준	사용물질 함량기준
세탁세제	염화비닐 등 6종	전인산업	머스크 케톤 등 18종
섬유 유연제	벤젠 등 12종	폼알데하이드(전 제형 75 mg/kg 이하) 등 14종	개미산(전 제형 10 % 이하) 등 10종

자료: 환경부

동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원료 전성분 공개⁹⁾, 자율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4.7.15.)

1. 세정제	16. 방향제	31.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2. 제거제	17. 탈취제	32. 초
3. 세탁세제	18. 물체 염색제	33. 습기제거제
4. 표백제	19. 물체 도색제	34. 인공 눈 스프레이
5. 섬유유연제	20. 자동차용 워셔액	35. 공연용 포그액
6. 광택 코팅제	21. 자동차용 부동액	36. 목재용 보존제
7. 특수목적코팅제	22. 인쇄용 잉크·토너	37.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승인
8. 녹 방지제	23. 인주	38.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9. 윤활제	24.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39. 보건용 살충제 승인
10. 다림질 보조제	25. 미용 접착제	40. 보건용 기피제 승인
11. 마감제	26. 문신용 염료	41.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승인
12. 경화제	27.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42.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승인
13. 접착제	28. 살균제	4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14. 접합제	29. 살조제	44.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
15. 경화촉진제	30. 기피제	

8) 법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2024.11.기준 84개 기업, 2,040개 제품에 대한 전성분이 공개되고 있음(환경부)

안전정보 공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시장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어 보임¹⁰⁾.

이에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또는 ‘자발적 정보 제공’의 행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하위 법령에 유효기간 연장 요건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현행법 제10조제8항11)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10)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함께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논의 사항

11)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상호,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품의 제조·수입 금지¹²⁾ 및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¹³⁾에 처함.

또한, 현행법 제34조¹⁴⁾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

-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12) 법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13) 법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4) 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1. 무독성
2. 환경·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¹⁵⁾에 처함.

그런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 변경 등 중대하지 아니한 표시사항의 오표기 등의 경우에도 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재 처분이라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을 명령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 금지 및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상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에 따른 개선명령 신설 시 제재 처분 비교]

의 무	위반 시 제재 수단	
	현 행	개 정 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하려는 경우 표시기준 준수 (법 제10조제8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법 제11조제1항제6호)	
	판매 등의 금지(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	표시기준 위반 시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 (안 제10조제9항 신설)
		개선명령 불이행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제한 의무 준수(법 제3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제4호)
		표시·광고의 제한 의무 위반 시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 (안 제34조제3항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58조제5호의2 신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개선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면서도 현행법¹⁶⁾ 상 개선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제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법적 의무 위반과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불이행으로 각각 다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16) 법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참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에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위반한 자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에서도 기준·규격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판매한 자와, 이를 위반하여 폐기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들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의2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 근거 명확화 및 시정권고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제품의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u>안전기준 검토</u>	3. ----- <u>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u>

현행	개정안
8. (생략) <신설> ② (생략)	<u>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u>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46조19)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등의 전문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19) **법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유통 이전의 승인 단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또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내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 기준]

대 상		조 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제49조(기록 및 보관)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49조(기록 및 보관)
	살생물제품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제49조(기록 및 보관)
	살생물처리제품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49조(기록 및 보관)

이에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표시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유통에 필요한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결과 국내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

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표시사항 일부 오폭기 등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벌칙²⁰⁾을 부과하기 이전에 권고를 통해 보다 신속한 시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소비자기본법」²¹⁾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 「고등교육법」²²⁾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경우에도 센터에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20) **법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1) 「**소비자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22)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및 포장·광고 제한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법상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이중처벌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내용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조사 업무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를 제1장 총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추가 함(안 제10조제2항).
- 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및 포장·광고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제5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8조제4호 단서 신설)

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 조사 업무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제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안 제10조제2항 단서 중 “추가적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추가적인”으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달리”를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로 한다.

안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46조제1항제8호 중 “등에”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을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u> <u>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u>

의 위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
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
조, 수입, 판매, 보
관, 유통 또는 사
용하는 자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적절한 관
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
조, 수입, 판매, 보
관, 유통 또는 사
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
을 진다.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 ----- ----- ----- ----- .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u>는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 ----- ----- ----- ----- . ----- -----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u> ----- ----- ----- <u>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u> -----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③ ~ ⑩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⑨ <u>환경부장관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u>	

⑨ (생 략)

<신 설>

수 있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44조의2(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
조, 수입, 판매, 보
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
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
지, 종업원의 교
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
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

<삭 제>

의 위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
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
조, 수입, 판매, 보
관, 유통 또는 사
용하는 자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적절한 관
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
조, 수입, 판매, 보
관, 유통 또는 사
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
을 진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4. ~ 7. (생 략)

<신 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4. ~ 7. (현행과 같음)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

	<u>제한사항 준수</u> <u>여부 등에 대한</u> <u>조사</u>	----- <u>-등 환경부령으</u> <u>로 정하는 사항</u> <u>에</u> -----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② <u>생활화학제품안</u> <u>전센터의 장은 유</u> <u>통되는 생활화학제</u> <u>품 및 살생물제의</u> <u>안전·승인 기준,</u> <u>표시기준, 표시·</u> <u>광고 제한사항 준</u> <u>수 여부 등에 대한</u> <u>조사 결과, 기준</u> <u>등에 적합하지 아</u> <u>니한 경우 사업자</u> <u>에 대하여 그 시정</u> <u>을 권고할 수 있다.</u>	② ----- ----- <u>제1</u> <u>항제8호에 따른 조</u> <u>사를 한 후 그 결</u> <u>과에 따라 해당 사</u> <u>업자에게 시정을</u> -----.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벌칙) ① ---- ----- ----- ----- -----	제57조(벌칙) ① ---- ----- ----- ----- -----

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 ----- -----.	-----, ----- ----- -----.
1. ~ 1의3. (생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 ~ 1의3. (개정안 과 같음)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을 표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 로 표시하고 안 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 ----- ----- ----- ----- ----- ----- <단 서 신설>	2. ----- ----- ----- ----- ----- ----- ----- 다 만, 제10조제9항 에 따른 개선명 령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신 설>	2의2. 제10조제9항 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개정안과 같 음)
3. ~ 14. (생략)	3. ~ 14. (현행과 같음)	3. ~ 14.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 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 ----- ----- ----- -----.	제58조(벌칙)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 ----- ----- ----- ----- ----- <단 서 신설>	4. ----- ----- ----- ----- ----- ----- . 다만, 제 34 조 제 3 항 에 따 른 개 선 명 령 을 받 은 경 우 는 제 외 한다.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4조제3항 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개정안과 같음) 5의2. (개정안과 같음)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6.7. (개정안과 같음)

		음)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검토”를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u> <u>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u>

	<u>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u> <u>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u>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

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
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⑧ (생 략)

<신 설>

⑨ (생 략)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
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
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
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
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
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생략)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② (생략)

<신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

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u>검토</u> 4.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 1의3. (생 략)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및 표시기준에 대</u> <u>한 검토</u> 4. ~ 7. (현행과 같음)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u>살생물제의 안전 · 승인 기준,</u> <u>표시기준, 표시 · 광고 제한사</u> <u>항 준수 여부 등 환경부령으</u> <u>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u>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u> <u>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u> <u>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u> <u>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u>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2. -----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	------------------